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2.23]

HILLSTATE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견본주택 및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방문 안내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는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ms-central)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청약 및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의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분양상담 전화(☎1533-1355),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3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082이며, 공고문 및 분양관련 내용은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ms-central)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3)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3.02.2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11111 (2024.02. 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3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 지상 46층, 4개동 총 5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05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4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6세대 포함]

■ 입주예정일 : 2028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24000082	01	084.5200A	84A	84.5200	31.4640	115.9840	58.3852	174.3692	14.0667	242	24	36	43	21	7	131	111	6
		02	084.0579B	84B	84.0579	30.9704	115.0283	58.0660	173.0943	13.9898	244	24	36	43	21	7	131	113	6
		03	084.0513C	84C	84.0513	30.7884	114.8397	58.0614	172.9011	13.9887	80	8	12	14	7	2	43	37	2
합 계											566	56	84	100	49	16	305	261	14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5200A	084.0579B	084.0513C
약식표기	84A	84B	84C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계약면적 등 합계면적은 소수점 이하 오차 발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배되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기반시설(도시가스 등) 부지제공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 형별, 청약유형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별 (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5%) 1회 계약 시	2회 계약후 30일 이내 납부	중도금(60%) 1차(10%) 2024. 10.05.	2차(10%) 2025. 04.05.	3차(10%) 2025. 12.05.	4차(10%) 2026. 08.05.	5차(10%) 2027. 02.05.	6차(10%) 2027. 09.05.	잔금(35%) 입주시 (입주예정월 말일)
084.5200A	84A	82	101동 1호 102동 4호	4~10	14	377,550,000	461,450,000	839,000,000	10,000,000	31,95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293,650,000
				11~20	20	389,700,000	476,300,000	866,000,000	10,000,000	33,3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303,100,000
				22~30	18	397,350,000	485,650,000	883,000,000	10,000,000	34,15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309,050,000
				31~36	12	399,600,000	488,400,000	888,000,000	10,000,000	34,4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310,800,000
				37~최상층	18	401,400,000	490,600,000	892,000,000	10,000,000	34,6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312,200,000
		160	103동1,3호 104동1,3호	4~10	26	389,250,000	475,750,000	865,000,000	10,000,000	33,25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302,750,000
				11~20	40	401,400,000	490,600,000	892,000,000	10,000,000	34,6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312,200,000
				22~30	36	409,500,000	500,500,000	910,000,000	10,000,000	35,5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318,500,000
				31~36	24	411,750,000	503,250,000	915,000,000	10,000,000	35,75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320,250,000
				37~최상층	34	414,000,000	506,000,000	920,000,000	10,000,000	36,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322,000,000
084.0579B	84B	82	101동 2호 102동 3호	4~10	14	382,050,000	466,950,000	849,000,000	10,000,000	32,45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297,150,000
				11~20	20	394,200,000	481,800,000	876,000,000	10,000,000	33,8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306,600,000
				22~30	18	402,300,000	491,700,000	894,000,000	10,000,000	34,7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312,900,000
				31~36	12	404,100,000	493,900,000	898,000,000	10,000,000	34,9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314,300,000
				37~최상층	18	406,350,000	496,650,000	903,000,000	10,000,000	35,15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316,050,000
		162	101동 3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4~10	27	386,100,000	471,900,000	858,000,000	10,000,000	32,9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300,300,000
				11~20	40	398,250,000	486,750,000	885,000,000	10,000,000	34,25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309,750,000
				22~30	36	406,350,000	496,650,000	903,000,000	10,000,000	35,15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316,050,000
				31~36	24	408,600,000	499,400,000	908,000,000	10,000,000	35,4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317,800,000
				37~최상층	35	410,400,000	501,600,000	912,000,000	10,000,000	35,6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319,200,000
084.0513C	84C	80	101동 4호 102동 1호	4~10	14	382,050,000	466,950,000	849,000,000	10,000,000	32,45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297,150,000
				11~20	20	394,200,000	481,800,000	876,000,000	10,000,000	33,8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306,600,000
				22~30	18	402,300,000	491,700,000	894,000,000	10,000,000	34,7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312,900,000
				31~36	12	404,100,000	493,900,000	898,000,000	10,000,000	34,9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314,300,000
				37~최상층	16	406,350,000	496,650,000	903,000,000	10,000,000	35,15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316,050,000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1,2차)	신한은행	100-036-038864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분양대금 관리계좌(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신한은행 100-036-038864,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2001동 301호 홍길동 → "20010301홍길동", 2001동 1304호 홍길동 → "20011304홍길동")
- 분양계약 체결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Ⅱ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3.04.(월)	2024.03.05.(화)	2024.03.06.(수)	2024.03.12(화)	2024.03.16(토) ~ 2024.03.24(일)	2024.03.25(월) ~ 2024.03.27(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견본주택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 - 문의 : ☎1533-1355 ※ 자격확인서류 기타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신청자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아래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8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8%범위) : 10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9%범위) : 4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 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예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 + 어머니(직계존속) 등재 : 평형 상관없음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단독세대)만 등재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범위) : 1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요건 및 세대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Ⅳ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통신 감리	소방 감리
상호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선경엔지니어링	㈜진일기술단	㈜더베스트이엔씨
금액	2,750,000,000	800,000,000	286,000,000	1,169,664,411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신탁사)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케이알파트너스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1001~1004호 (우동, 인텔리움센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80111-1347384	110111-2153015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시행위탁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견본주택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ms-central)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견본주택(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 I ☎1533-135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번지

현장 위치도

현 장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38-1번지 일원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1533.1355

총 566세대 84㎡A·B·C

시행 true friend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위탁 KR Partners 시공 현대엔지니어링